

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(제58조의2제1항관련)

1. 타조

가. 생체검사

- 1)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.
- 2)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,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
- 3)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- 4)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 - 가) 타조의 자세·거동·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.
 - 나)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.
 - 다) 필요한 경우 눈꺼풀·비강·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- 5)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6)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가) 단독·앵무병·탄저·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
 - 나)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상풍·패혈증·농독증·뇨독증·황달·수종·종양·전신쇠약·전신빈혈증·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(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)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
 - 다)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

나. 해체검사

- 1)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.
- 2) 심장·폐·간 및 신장은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, 그 밖의 모든 흉강·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정상적인 지

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.

3) 검사내용

가) 패혈증·농독증·관절염·염증·폐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

나) 불완전 방혈 도체, 이물질 오염 도체,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

다)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

라) 내부장기·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·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

4)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

검사대상		폐기범위		
		일부	전체	폐기세부내용
기낭염	국소적	○		감염조직 폐기
	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빈혈	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탄저	도체와 가죽·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		○	전체지육 폐기
관절염	국소적·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	○		감염부위 폐기
	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생물제제의 잔류			○	전체지육 폐기
타박상	국소적, 표면적	○		감염부위 폐기
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중추신경 장애	우울, 졸음, 혼수, 비틀거림, 선회, 근육경련		○	전체지육 폐기
도축과정중 오염	국소적	○		오염부위 폐기
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사후변성	자연적인 표면의 변화	○		관련부위 폐기
	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잔류물질	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			도축금지
쇠약	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성 변성을 보이는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염증	국소적	○		감염기관·부위 폐기
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신장	검사후 신장은 폐기		○	신장 폐기

간	염증·농양·괴사·경화·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, 장간염,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		○	간 폐기
폐	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		○	폐 폐기
근육 염증·퇴화 또는 침윤	국소적	○		감염부위 폐기
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종양	국소적	○		감염기관 폐기
	전이성, 전신적, 조류백혈병복합체		○	전체지육 폐기
기생충증	국소적	○		감염기관·부위 폐기
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색소 침착	국소적	○		감염부위 폐기
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기타	병리조직학적,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검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
다. 실험실 검사

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
- 1)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
- 2)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2. 오소리

가. 생체검사

- 1)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.
- 2)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
- 3)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 - 가) 동물의 자세·거동·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.
 - 나)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.

- 다) 필요한 경우 눈꺼풀·비강·구강·항문·직장검사를 실시한다.
- 4)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5)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- 6)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.
- 가) 부루세라병·광견병·탄저·출혈성폐혈증·백혈병·괴사성간균증·결핵병·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
- 나)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·농독증·폐혈증·요독증·황달·수종·중양·전신쇠약·전신빈혈증·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(생물학적체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)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
- 다)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

나. 해체검사

- 1)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.
- 2) 심장·폐·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, 그 밖의 모든 흉강·복강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.
- 3) 검사내용
- 가) 패혈증·농독증·관절염·염증·괴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
- 나) 불완전 방혈도체, 이물질 오염도체,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
- 다)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
- 라) 내부장기·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·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
- 4)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

검사대상	폐기범위		
	일부	전체	폐기세부내용
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		○	전체도체 폐기

종양	양성	국소적	○		감염기관·부위 폐기
	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	악성	국소적, 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흑색증, 가성백혈병		전신적일 경우		○	전체지육 폐기
타박상, 농양		국소적	○		감염부위 폐기
		전신적		○	전체지육 폐기
폐나 가슴막(흉막)·심막·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염증,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·농혈증·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,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신염				○	전체지육 폐기
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				○	전체지육 폐기
개선충움	경미한 경우		○		감염부위 폐기
	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			○	전체지육 폐기
기생충	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		○		감염부위 폐기
	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터(아픈 곳)		○		감염장기 폐기
	전신적인 감염			○	전체지육 폐기
포낭충증				○	전체지육 폐기
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				○	전체지육 폐기
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				○	전체지육 폐기

다. 실험실 검사

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.

- 1)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
- 2)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